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16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(2010년 12월 15일) 상 정 원안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기능에 적합한 사무조정을 위해 시장의 권한사무 중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한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(안 별표 1 및 별표 2)

-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 규정 변경(세정과)
-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위임사무 삭제(도로과)
- 나. 사무이관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(안 별표 1)
 - 하천관리에 관한 사무(재난안전관리과 → 하수과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어	<u>о</u>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**필요한 사항** :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1의 세정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1. 시세 부과징수	가. 납세의 고지	·「지방세기본법」제55조	구청장
	사무에 관한 다		・같은 법 시행령 제36조	
	음의 권한	나. 부과취소 및 변경	・같은 법 제58조	
		다. 납기 전 징수	・같은 법 제73조	
			・같은 법 시행령 제59조	
		라. 천재 등에 따른 기한의 연장	· 같은 법 제26조, 제27조	
			・같은 법 시행령 제7조	
		마. 가산금 및 독촉	· 같은 법 제59조, 제61조	
			・같은 법 시행령 제38조	
		바. 체납처분	・같은 법 제91조부터 제98	
			조까지	
		사. 결손처분	・같은 법 제96조	
			・같은 법 시행령 제84조	
		아. 교부청구	· 같은 법 제101조	
		자. 관허사업의 제한	・같은 법 제65조	
			・같은 법 시행령 제51조	
		차. 징수유예	・같은 법 제80조부터 제84	
			조까지	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	카. 지방세 환급금 처리	•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	구청장
		타. 소멸시효	· 같은 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	
		파. 소멸시효	·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	
		하. 공시송달	・같은 법 제33조	
		거. 징수촉탁	・같은 법 제68조	
		너. 공탁	・같은 법 제72조	
		더.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	· 같은 법 제136조	
		러.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	・같은 법 제63조	
		머. 세목별과세증명서의 발급	·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	
			법률」제9조	

별표 1의 도로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10호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징수란을 삭제하고, 재난안전관리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4호란부터 제11호란까지를 삭제하며, 하수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5호란부터 제12호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실과 소별	위임	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하수과	5. 소형	하천 점용	가.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	·「소하천정비법」제14조	구청장
	및 -	유지관리에	허가 및 신고	・같은 법 시행령 제12조	
	관한	다음의 권		・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	
	한			및 제12조	
			나. 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	・같은 법 시행령 제14조	
			다. 소하천 점용에 따른 원상	・같은 법 제16조	
			회복 비용의 예치		
			라. 법령위반자 및 공익을 위	·같은 법 제17조·제18조	
			한 허가 취소 등의 처분	및 제18조의2	
			마.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	・같은 법 제22조	
			바.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과	·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	
			관련한 법령위반자의 조치		

실과				수임
위 소별	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적 용	기관
하수과 6.	「공유수면관리	가. 공유수면의 관리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구	구청장
및	매립에 관한 법		에 관한 법률」제4조	
률」	제4조에 따라	나. 공작물의 신·개축 변경 허가	・ 같은 법 제8조	
시경	앙이 관리하는		• 같은 법 시행령 제4조	
공유	우수면에 관한	다. 접한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	・ 같은 법 제8조	
다음	음의 권한	허가		
		라. 준설 및 굴착 허가	・ 같은 법 제8조	
		마. 인수 및 주수 허가	・ 같은 법 제8조	
		바. 흙, 모래 또는 돌을 채취, 식물	・ 같은 법 제8조	
		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해위 허		
		가		
		사.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의 공유	・ 같은 법 제8조	
		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		
		위 허가		
		아. 부두, 방파제 등의 시설물 점용	・ 같은 법 제8조	
		또는 사용허가		
		자. 나.~아. 이외의 점용허가	・ 같은 법 제8조	
		차.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허가	・ 같은 법 제8조	
			・ 같은 법 시행령 제8조	
		카. 같은 허가의 고시	・ 같은 법 제8조	
7.	제6호에 따라	가.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허기	가를 받은 자		관한 법률」 제14조	
에	관한 다음의		・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	
권*	한	나.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감면	· 같은 법 제14조	
			・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	
		다. 원상회복 의무명령 및 면제승인	· 같은 법 제21조	

실과				수임
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 거 법 적 용	기관
	8. 제6호의 허가에	가. 권리의무의 이전허가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	관한 다음의 권		 관한 법률」제 <mark>16</mark> 조	
	한 -		·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
		나. 권리의무의 상속·신고 처리	· 같은 법 제16조	
			・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
		다. 발기인 등의 권리승계 신고의	· 같은 법 제16조	
		처리	・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
		라. 성명, 주소변경 등 제 신고의	· 같은 법 제16조	
		처리	・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	
		마. 허가기간 연장 허가	・ 같은 법 시행령 제8조	
	9. 제6호의 허가를	가. 허가의 취소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	받은 자가 법령		관한 법률」 제19조	
	을 위반하였을	나. 효력의 정지처분, 원상회복,	• 같은 법 제19조	
	때의 다음의 조	손해방지 시설의 설치		
	치를 취하는 권	다. 공작물 등의 개축허가 이전조	• 같은 법 제19조	
	한	치		
	10. 공유수면의 장	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	애물 제거 명령		관한 법률」 제21조	
			• 같은 법 시행령 제3조	
	11. 공유수면의 사	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	용 제한 또는 금		관한 법률」제12조	
	지			
	 12. 공유수면관리		•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	
	를 위한 조사 및		관한 법률」 제55조제1항	
	질문			

별표 2의 세정과 위임사무명란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실과 소별	위임사무명	단 위 사 무 명	근거법적용	수임 기관
세정과	2.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	가. 지방세관련 제증명서의 발급	 「지방세기본법」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	구청장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